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

####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전문화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함 (안 제1조)
-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 (안 제5조)
-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6조)
-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 및 직무, 이사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함 (안 제11조)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 제14조)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으며, 재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재단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보고·검사·감사 권한을 규정함 (안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상옥)

- 이 조례(안)은 제안 이유와 같이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 최근 우리구 영등포아트홀, 선유대림·문래 정보문화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경방타임스퀘어내 공공문화복지 공간 조성, 문래동 철재 상가내 100여개의 자생적 예술인 단체들의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의 융화, 문화 수익 창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문화적 성향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지만 문화전담 전문 인력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 행정에 순환보직인 소수의 행정공무원이 시설운영,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등 관 주도형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 법인의 출현이 대두되고 있음.
- 영등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 근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주 사업 목적과 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초기 자본금 출연과 재단이 완전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기 전까지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 부담경비 및

증장기적으로 총 200억원 출연금 조성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문화재단 사업 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위원회의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우수 재단의 공연수익 창출, 문화 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 및 후원·협찬 마련 등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은 영등포아트홀이나 도서관의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국민의 문화예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전문예술인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 상호 보완 및 협력 체계구축과 더불어 켈처노믹스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3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로 한다.
- 안 제7조 제5항 제2호 “재정경제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7조 제5항 제3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하며,

- 안 제7조 제6항 중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 을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로 한다.
- 안 제7조 제7항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를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하고,
- 안 제18조에는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고
- 안 부칙 제4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로 한다.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4호 |
|----------|----------|

제안년월일 : 2012. 6.

제출자 : 권영식 위원외 1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 제7조 제3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로 한다.
- 안 제7조 제5항 제2호 “재정경제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7조 제5항 제3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하며,
- 안 제7조 제6항 중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 을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로 한다.
- 안 제7조 제7항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를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하고,

- 안 제18조에는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고
- 안 부칙 제4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제3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로 한다.
- 안 제7조 제5항 제2호 “재정경제국장” 을  
“재정국장” 으로 하고,
- 안 제7조 제5항 제3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하며,
- 안 제7조 제6항 중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 을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로 한다.
- 안 제7조 제7항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를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하고,
- 안 제18조에는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고

- 안 부칙 제4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성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 정 안 대 비 표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p><b>제7조(임원)</b>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p> <p>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에 추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국장</li> <li>2. 재정경제국장</li> <li>3. 주민생활지원국장</li> </ol> <p>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b>제18조(공무원의 파견)</b>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 <p><b>제7조(임원)</b> ① ~ 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p> <p>-----</p> <p>-----</p> <p>④ (조례안과 같음)</p> <p>⑤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안과 같음)</li> <li>2. 재정국장</li> <li>3. 복지국장</li> </ol> <p>⑥ -----</p> <p>-----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p> <p>-----</p> <p>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⑧ (조례안과 같음)</p> <p><b>제18조(공무원의 파견)</b> -----</p> <p>----- . 단, 재단설립 후</p> |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4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전문화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영등포 문화재단을 설립함 (안 제1조)
- 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 (안 제5조)
- 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6조)
- 마.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 및 직무, 이사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바.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함 (안 제11조)
- 사.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 제14조)
- 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으며, 재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자. 재단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보고·검사·감사 권한을 규정함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법」
- 2) 「문화예술진흥법」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0. 1. 7. ~ 27.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등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대림 정보문화도서관,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선유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행정국장
2. 재정경제국장
3. 주민생활지원국장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계잉여금)** 구는 매 회계연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때 재단의 세계잉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감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